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6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성주읍 금산·학산리 일원이 성주2 일반산업단지로 지정(경상북도 고시제2012-246호(2012.8.13))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성주군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

구 분	지 역 명	면 적(㎡)	비 고
성주2일반산업단지	성주읍 금산리, 학산리 일부지역	955,880	

나.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예고

○ 예고기간 : 2013. 3. 5. ~ 3. 25. (20일간)
○ 예고장소 : 군·읍면게시판, 군 공보 및 군청 홈페이지
○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3. 참고자료

가. 성주2 일반산업단지 지정 현황

○ 지역지정 : 2012. 8. 13(경상북도 고시 제2012-246호)
○ 위 치 : 성주읍 금산·학산리 일원
○ 면 적 : 955,880㎡
○ 개발기간 : 2012. 8 ~ 2015. 12. 31
○ 시 행 자 : 성주군수

성주군 고시 제 호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

지방세법 제112조 및 성주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월 일

성 주 군 수

1. **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(안)**

구 분	지 역 명	면적(㎡)	비 고
성주2일반산업단지	성주읍 금산리, 학산리 일부지역	955,880	

2. **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: 도시계획도(붙임)**

※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부 지번별 조서는 성주군청 재무과(☎054-930-6124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